

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설명자료

○ (적용대상용역) 호텔에서 2박 이상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*

- * 관광객이 숙박요금을 호텔에 직접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 기준
 - 숙박알선수수료, 숙박요금에 포함된 조식 포함 단, 별도로 계산된 조식은 제외
 - 봉사료는 제외 (부가세 영세율 적용시와 동일 기준 적용)

○ (적용대상호텔)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로 가격인상하지 않은 호텔

- 분기 단위로 전년 동기(3개월) 객실종류별* 평균실판매가 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문체부 장관 지정 호텔

* 일반객실, 스위트룸 2종류로 구분

- 스위트룸 중 표시가격(rack rate) 기준 최고가인 호텔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

** 신규등록 · 휴업 등으로 전년 동기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, 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동기간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공급가액 내역 제출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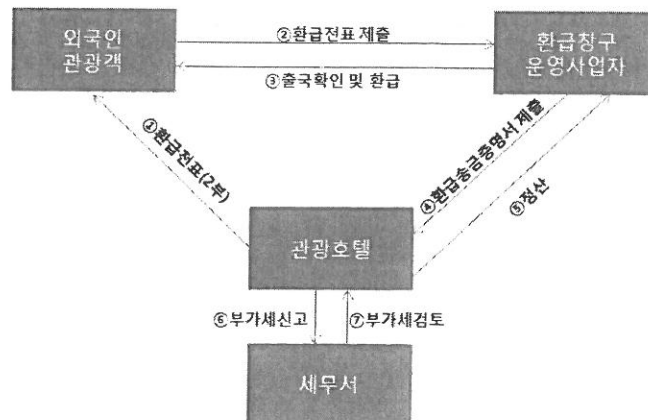
- 3개월 단위로 사전 신청('14.3./'14.5./'14.7./'14.10.), 가격미인상 준수여부는 사후에 문체부 장관이 인상여부 확인*하여 국세청장에 통보

*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,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로 확인

○ (적용관광객 범위) 특례적용호텔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 받은 모든 외국인 관광객* (단, 단체관광객 제외)

* 「외국환거래법」상 비거주자 중 개인 : 국내영업활동 또는 6월 이상 체재시 제외

○ (환급절차) 호텔이 숙박용역공급확인서(환급전표) 교부하면, 문체부장관이 선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(글로벌텍스프리, KTis)가 부가세 환급



○ (환급장소)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환급창구 및 시내환급창구 (단, 출국확인이 가능한 경우)